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원금
손실가능
상품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본 설명서는 고객님의께서 가입하신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설명서 외 판매사가 고객님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정보는 교부 받으신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 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 이행확인
(판매직원 날인)

가입하신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직원 성명


서명 (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ISA) : 신탁형ISA란 예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일정기간동안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신탁상품입니다.

1.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ISA 신탁형은 편입된 운용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편입자산의 운용자산 설명서를 통해 운용자산이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에·적금 운용시

구분	특징
예금자보호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보호됩니다.
위험등급 6등급 (매우낮은위험)	위험등급의 의미 : MMT,(타)금융기관 예/적금 유의사항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유동성 위험	본 상품은 계약 만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시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2) 투자상품 운용시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가입 유의사항
	투자대상자산 기준	97.5% VaR모형	수익률 변동성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초과	25% 초과	위험선도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이하	25% 이하	투자원금의 보존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0% 이하	15% 이하	투자원금의 보존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0% 이하	1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 이하	5%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이하	0.5%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투자대상자산 및 97.5 VaR 또는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의 의미는 집합투자기구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일간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발생가능한 최대 예상 손실률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투자대상자산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을 의미합니다.
-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은 재산정 시점에 따라 '97.5% VaR' 또는 '수익률 변동성'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유동성위험	ISA 신탁형 내 운용자산의 유동성 위험은 투자성 상품의 개별자산에 따라 '중도해지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니 개별 운용자산의 설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2. 고객님의 권리 보호 사항 안내

구분	내용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1)} 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small>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small>						
구속성 관련 사항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제공한 날 전 · 후 1개월 내 투자성 상품 가입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예금상품 관련사항	2020년 9월 28일 제정된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기준」의거, 비예금상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상품별/고객별 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 안내 [고난도 금융상품 한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한 경우,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제공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전 · 재화등을 고객에게 반환하고, 금전 · 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 이율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합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서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인터넷뱅킹 및 WON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안내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행이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은행 영업점,고객센터(☎02-2008-5000) 및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피콜 안내	<table border="1"> <tr> <td>[영업점 가입]</td> <td>[비대면 가입]</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해피콜(전화로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1일 2회 2영업일 동안 전화(9:00~18:00) ☎ 해피콜 발신번호 : 1599-4200 온라인 해피콜(문자를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당일 문자 발송되며, 미응답 시 다음 영업일에 추가 1회 재발송 발송된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 후 연결되는 해피콜 화면에서 해피콜 실시 가입일에 해피콜 미진행 시, 다음 영업일에 문자 발송되며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td> </tr> </table>	[영업점 가입]	[비대면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해피콜(전화로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1일 2회 2영업일 동안 전화(9:00~18:00) ☎ 해피콜 발신번호 : 1599-4200 온라인 해피콜(문자를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당일 문자 발송되며, 미응답 시 다음 영업일에 추가 1회 재발송 발송된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 후 연결되는 해피콜 화면에서 해피콜 실시 가입일에 해피콜 미진행 시, 다음 영업일에 문자 발송되며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영업점 가입]	[비대면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해피콜(전화로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1일 2회 2영업일 동안 전화(9:00~18:00) ☎ 해피콜 발신번호 : 1599-4200 온라인 해피콜(문자를 통한 해피콜) 실시 가입 후 당일 문자 발송되며, 미응답 시 다음 영업일에 추가 1회 재발송 발송된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 후 연결되는 해피콜 화면에서 해피콜 실시 가입일에 해피콜 미진행 시, 다음 영업일에 문자 발송되며 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해피콜 진행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p>Q. 신탁형ISA 만기연장이 가능한가요? A. ISA 만기 3개월전부터 전영업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840개월(월단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p> <p>Q. 신탁형ISA 내에서 운용하는 정기에 · 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보호됩니다.</p> <p>Q. 신탁형ISA 세제혜택은? A.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의 경우에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좌의 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되어야 비과세가 되고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다른 운용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법령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Q. 신탁형ISA의 신탁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운용상품별 신탁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 시 후취로 납입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운용상품별 신탁보수 =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 ×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 </div> <p>※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예금 · 적금 ·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td> <td style="text-align: right;">연 0.1%</td> </tr> <tr> <td>●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td> <td style="text-align: right;">연 0.2%</td> </tr> <tr> <td>●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td> <td style="text-align: right;">연 0.6%</td> </tr> </table> <p>※ 현금성 자산(고유계정대) : 연 0.1%</p>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선취판매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부과되는 A클래스 집합투자증권(펀드)이 편입되면,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취하지 않고 펀드보수가 부과됩니다. (신탁보수 별도) * 펀드 보수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p>	● 예금 · 적금 ·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	연 0.2%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 예금 · 적금 ·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	연 0.2%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개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한 특정금전신탁을 말하며, 고객(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우리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과의 특별한 신임 관계를 바탕으로 금전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관리·처분 등을 하는 계약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설명

<p>가입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18에서 정한 별도의 가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국내거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한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p>위탁자 및 수익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맡기는 자입니다. -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을 수령하는 자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입니다.
<p>계약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기간은 3년 이상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입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영업일까지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p>상품구조</p>	<p>금융상품의 구조는 해당상품별 상품설명서, 약관 및 세부내용에 따릅니다.</p>
<p>부적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의 가입대상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은행은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등재된 가입자의 최종주소 또는 연락처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향후 은행에 등재된 주소와 연락처가 상이하여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주소 및 연락처가 변동되는 경우 사전에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수탁자(은행)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적격자 확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반드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가입자의 경우, 관계법령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에 의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계좌 내 세제혜택 소멸 및 기존 세제혜택을 추징하게 됩니다. 해당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p>예금자 보호</p>	<p>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보호됩니다.</p>
<p>계약해지 (중도인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은 일부해지가 불가합니다. - 단,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용자산별 특성에 따라 중도인출 세부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전영업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운용 중인 계약 만기 시점에 매도일이 가장 긴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일괄 매도되어 만기해지금 수령계좌로 자동입금 처리됩니다. -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 현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 신청시 보유중인 운용자산을 모두 매도하여야 하므로 중도해지를 신청한 당일은 해지자금 수령이 불가하며, 운용자산에 따라수익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해지 사유(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등^주)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됩니다. ^주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수탁자(당행)의 영업정지·파산 - 신탁형ISA 본인계좌 담보대출(수익권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전을 인출하는 경우는 해당 인출에 신탁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기일부터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은 상품별 환매·매도 종료일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빠른 날까지 부여되며, 그 이후부터 위탁자의 실제 계좌 해지일까지는 일반과세 처리됩니다. - 신탁형ISA의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p>세제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의 경우에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다른 운용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계좌의 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되어야 비과세됩니다.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ISA 계좌를 해지하여 60일 이내에 ISA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내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일반과세(15.4%)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p>납입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로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의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만큼 차감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최종 납입가능 금액이 산출되며 잔여한도가 없는 경우 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최종 납입가능 금액 = 최소값 [A.세금우대저축한도, B.ISA 납입한도] - ISA 기납입금액</p> <p>A. 세금우대저축한도 : [1억-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한도금액 ×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잔여기간]</p> <p>※재형 및 소장의 총 가입기간은 연장여부와 등과 무관하게 10년으로 간주</p> <p>B. ISA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전년도 미납분 이월 가능, 최대 1억원)</p> <p>※전년도 미납분: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4년 이상인 경우 4년)】 - 누적납입금액 (예시)</p> </div> <table border="1" data-bbox="280 824 1513 1016"> <thead> <tr> <th rowspan="2">보유계좌</th> <th rowspan="2">개설일</th> <th rowspan="2">한도</th> <th rowspan="2">만기일(10년)</th> <th rowspan="2">납입금액(누적)</th> <th colspan="2">2021.01.02 기준</th> </tr> <tr> <th>잔여기준</th> <th>한도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재형저축</td> <td>2015.01.02</td> <td>300만</td> <td>2025.01.02</td> <td>-</td> <td>17분기</td> <td>5,100만</td> </tr> <tr> <td>소장펀드</td> <td>2015.03.04</td> <td>600만</td> <td>2025.03.04</td> <td>-</td> <td>5년</td> <td>3,000만</td> </tr> <tr> <td>ISA</td> <td>2018.05.06</td> <td>200만</td> <td>2026.05.06</td> <td>1,000만</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2021.01.02. 기준 ISA 납입 가능 금액(위의 ISA 최종 납입가능 금액 계산방식 참조)</p> <p>① 1억 - (재형 한도 합계 5,100만 + 소장 한도 합계 3,000만) = 1,900만원</p> <p>② 8천만원(연간 2천만원, 4년차 계좌) → 최소값(①1900만원, ②8천만원) - ISA기납입금액 1000만 = 900만원</p>	보유계좌	개설일	한도	만기일(10년)	납입금액(누적)	2021.01.02 기준		잔여기준	한도합계	재형저축	2015.01.02	300만	2025.01.02	-	17분기	5,100만	소장펀드	2015.03.04	600만	2025.03.04	-	5년	3,000만	ISA	2018.05.06	200만	2026.05.06	1,000만	-	-
보유계좌	개설일						한도	만기일(10년)	납입금액(누적)	2021.01.02 기준																					
		잔여기준	한도합계																												
재형저축	2015.01.02	300만	2025.01.02	-	17분기	5,100만																									
소장펀드	2015.03.04	600만	2025.03.04	-	5년	3,000만																									
ISA	2018.05.06	200만	2026.05.06	1,000만	-	-																									
<p>신탁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운용상품별 신탁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 시 후취로 납입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운용상품별 신탁보수 =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 ×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p> </div> <p>※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p> <table border="1" data-bbox="280 1285 1474 1375"> <tr> <td>● 예금·적금·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td> <td>연 0.1%</td> </tr> <tr> <td>●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td> <td>연 0.2%</td> </tr> <tr> <td>●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td> <td>연 0.6%</td> </tr> </table> <p>※ 현금성 자산(고유계정대) : 연 0.1%</p>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선취판매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부과되는 A클래스 집합투자증권(펀드)이 편입되면,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취하지 않고 펀드보수가 부과됩니다.(신탁보수 별도)</p> <p>* 펀드 보수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p>	● 예금·적금·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	연 0.2%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 예금·적금·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	연 0.1%																														
●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파생결합사채	연 0.2%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 ETF, ETN,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연 0.6%																														
<p>만기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연장은 신규일로부터 36개월 이상 84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자가 정하며 만기일 3개월 전부터 계약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횡수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시,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가입유형이 변경되며 가입요건에 따라 가입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장된 계약 시작일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유형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가입유형이 변경되어 세제혜택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만기연장 전 서민형인 경우 만기연장 후 일반형 자격으로 변경되면 만기 해지 시 최초 신규일부터 소급적용되어 비과세 200만원(일반형)이 적용됩니다) -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p>계약서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는 특정증권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서의 고객 기재사항은 위탁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서 1부를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p>운용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계좌 신규(입금)시 현금성자산(고유계정대)으로 입금되며, 별도의 운용지시가 필요합니다. -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운용합니다. - 운용지시 가능자산은 조특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으로 합니다. - 운용지시는 접수 후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계좌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용상품의 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용상품 매수 · 매도 시 결제일 시차 발생,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성자산(고유계정대)으로 운용되며, 이 경우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상품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 환매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 항목」 을 운용상품별 상품설명서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담보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 중인 신탁재산의 종류 등으로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p>정기예금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의 매 만기 시에 「최초 계약 기간」 으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정기예금은 최초 가입한 해당 은행으로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 다만,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 초과 등을 사유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 매도되거나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대체되어 자동 재예치 될 수 있습니다. - 재예치 시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예치된 정기예금의 만기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의 만기를 초과할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해지시 해당 정기예금은 특별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정기예금은 만기해지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상품은 계약 만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ISA 내 정기예금의 만기도래 전 정기예금 매도지시(보유상품변경 및 중도인출 등)시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p>구속행위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제공한 날 전, 후 1개월 내 투자성 상품 가입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p>위법계약 해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위법 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p>청약철회제도 안내 [고난도 금융상품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한 경우,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제공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전 · 재화등을 고객에게 반환하고, 금전 · 재화등의 반환이 늦어 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서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인터넷뱅킹 및 WON뱅킹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p>자료열람 요구권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요구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p>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은행 영업점, 고객센터(☎02-2008-5000) 및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핵심설명서

원금
손실가능
상품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내사항

가입요건	<p>■ 위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별도의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이 신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정한 별도의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p>
과세특례	<p>■ 위탁자는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위탁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과세특례 사항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특법에서 정한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위탁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별도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p>
계약해지	<p>■ 위탁자는 운용방법을 변경 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위탁자는 수탁자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 지정 또는 신탁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방법 변경 및 계약의 해지 제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운용방법 변경 지정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p>
운용내역 통보	<p>■ 수탁자는 매분기 1회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합니다.</p> <p>수탁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그 다음달 말까지 수탁자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운용내역 수령을 원하지 않아 신탁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운용내역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p>
금융상담 서비스	<p>■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업자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 임직원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조회서비스 제공	<p>■ 수탁자는 종합자산관리신탁재산의 운용내역(운용종목 및 비중 등) 및 평가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종합자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본인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내역 및 신탁재산의 평가금액을 인터넷 등의 전산매체, 영업점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의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p>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